

[별표 4]

허가수수료의 기준(제32조관련)

사 항 별	수 수 료 액
1.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·관리에 관한 허가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2.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	
가.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나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다. 유수의 사용, 하천부속물의 점용 및 토석·모래·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	점용료의 1/1,000
라. 토지의 점용, 스케이트장·유선장의 설치, 식물의 재식 및 선박의 운항	없 음
3.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	
가.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나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	허가시의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다. 죽목의 재식	없 음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를 받는 경우	없 음